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2023. 8. 30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해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이하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대상 금융기관)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경상남도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제3조(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전략지원한도, 특별지원한도 및 일반지원한도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은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연구개발 우수기업
6. 추천기업
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9. 전입기업
10. 수출관련기업
11.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12.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 13. 명절·재해 자금
- 14. 기타 지원기업
- 15.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② 지원대상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전략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를 경남본부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② 전략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최대배정가능액”이라 한다)을 배정한다.

③ 전략지원부문은 업체당 15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30억원) 이내에서 배정한다.

④ 전략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40% 이상에서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하여 50%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 배정하며 신용등급 제한은 제6조제6항에 따른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

제6조(특별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경남본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경남본부는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 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2항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 이내에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④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

⑤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하여 50%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4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일반지원부문) ①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을 제외한 지원대상업체를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전략지원부문 및 제6조에 따른 특별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일반지원부문에 배정한다.

③ 일반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최대배정가능액을 기준으로 비례배정한다.

④ 일반지원부문은 업체당 7.5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15억원) 이내에서 배정한다.

⑤ 일반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제6조 제6항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⑦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8조(지원일몰제도) 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금대출은 최초대출일로부터 최장 5년간 지원하되 동 기간 내 연장이 가능하며, 토지만 구입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 다만, 지원기간동안의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의 누적지원금액(지원기간동안의 월별 지원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실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신규 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지원을 재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지원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을 계산한다. 다만, 신규지원 중단기간동안 자금을 수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을 신규지원 재개시점 이후의 지원실적에 포함한다.

④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A1)”, “명절·재해 자금(A14)”중 재해자금, “기타 지원기업(A15)”은 신규지원 중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명절·재해자금 및 기타 지원기업) 본부장은 제4조 제1항 제13호(명절·재해자금) 및 제14호(기타 지원기업) 지원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3. 다른 규정 등에 의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이차보전대출 제외)
5.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
6.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
7. 부동산업, 유흥업 및 개인서비스업 등 <별표2>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

제11조(자료제출) ① 금융기관이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0일까지 한국은행 경남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취급실적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4.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5. 창업중소기업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6.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

②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한 대출의 만기도래, 중도상환, 원 차주의 폐업업체 또는 최종부도거래처 지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의 회수 및 배정) 본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1조의 보고서 및 자료에 의해 산정한 당월중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점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

제13조(제재) ① 본부장은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즉시 회수
2.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5배 이내에서 위규사유별로 배정한도 감축

가.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 2.5배 이내

나.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 1.5배 이내(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 인정시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

다.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 2배 이내

② 제1항의 제재 등으로 회수된 한도는 제재를 받지 않은 여타 금융기관에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14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9. 8.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0. 5.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6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2020.8월 한도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0. 11. 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2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2021.2월 한도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8.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2021.11월 한도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2. 1.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28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2022.3월 한도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2. 10. 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1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2023.1월 한도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 배정된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당행 지원종료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4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2023.6월 한도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 배정된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당행 지원종료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기준 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전산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 ¹⁾³⁾
A1	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중 제조업(KSIC 업종코드 10~34) 또는 아래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동 시행령 제4조 해당업종은 제외 (금융기관 영업점장 및 결제모점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확인) * 지원대상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보통신업(KSIC 업종코드 58~63) ②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KSIC 업종코드 70~73)
A2	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A3	혁신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 선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기업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기업 - 해당업체의 사업목적과 관련있는 특허 보유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보유기업 - 중소기업청 선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으로서 제조업(KSIC 업종코드 10~34), 건설업(KSIC 업종코드 41~42) 영위기업
A4	녹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2에 의거 환경부가 녹색기업으로 선정한 제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한 환경표지의 사용을 인증받은 제품 제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의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한 환경성적표지(EDP)의 사용을 인증받은 제품 제조업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 재활용품 품질인증)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수 Green-Biz” 선정기업
A5	연구개발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서비스업**은 0.5%)를 초과하는 기업 *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증가액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 개발비 상각비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E, G~N, P~S업종
A6	추천기업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 경상남도 선정 ‘고용우수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회적기업중앙법상 회사 및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중 상법상 회사 - 경상남도 선정 「경남 하이(Hi)트랙」 협약기업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보육기업

전산 코드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¹⁾³⁾
A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 <별첨1>의 도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경상남도 소재 기업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 <별첨2>의 도 지역혁신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경상남도 소재 기업 - 경상남도 및 중소기업청에서 추천하는 경상남도 소재 스마트 공장구축 기업 - 경상남도 선정 '지역혁신 선도기업'
A9	전입기업	- 타 지역으로부터 경남지역으로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조업(KSIC 업종코드 10~34) 영위기업
A10	수출관련기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A11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4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 경상남도 소재 농업, 임업, 어업(KSIC 업종코드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어업자(순수개인 제외) 및 농어업법인 포함
A14	명절·재해 자금	- 재해(수해, 화재, 지진 등), 연쇄부도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업체중 지역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본부장이 인정한 기업 - 설, 추석 및 연말 등 자금수요기에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기업
A15	기타 지원기업	- 기타 특별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기업
A16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 업종 영위기업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상남도 소재 기업<()내는 KSIC 업종코드> ① 숙박·음식점업(55~56), 다만, 주점업(5621)은 제외 ② 도소매업(45~47) ③ 여행사·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④ 운수·창고업(49~52) 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90~91), 다만,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무도장 운영업(91291)은 제외

- 주 :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며, 인증서 등에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선정일(또는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
- 2)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3)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경상남도 지역특화산업 해당업종

산업명	KSIC 코드	항목명
스마트기계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첨단항공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노융합스마트 부품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항노화메디컬산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별첨2>

경상남도 지역혁신전략산업 해당업종

산업명	KSIC 코드	항목명
친환경스마트조선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첨단항공우주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판 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미래형자동차부품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그린에너지산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지능형의료부품 바이오헬스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220	한약약품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산업명	KSIC 코드	항목명
부품소재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132	강관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지능형기계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 장비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나노융합소재부품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지능형로봇산업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ICT융합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별표2>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

업종명 ¹⁾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¹⁾
주점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금융관련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71101 변호사업
	71102 변리사업
	71201 공인회계사업
	71202 세무사업
보건업	861 병원
	862 의원
무도장	91291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미용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 미용업
	96113 피부 미용업
	96119 기타 미용업
안마업	96122 마사지업

주 : 1) 업종명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업종군의 통칭이며 구체적으로는 이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코드를 지정하여 배정 가부를 판단함. 이 때 배정 제외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지정될 경우 하위 분류에 해당하는 세세분류 영위 업종은 모두 배정 제외업종에 해당됨

<별지 제1호 서식>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년 월 일)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귀하

은행 부(점)장 (인)

I. 신청내용

대출취급액	백만원	대출기간	~
금리	고정 : %	대출계좌번호	
	변동 : % (기준금리 $\Delta\Delta$ + 자산금리 $\square\%$)	자금종류	<input type="checkbox"/> 운전자금 <input type="checkbox"/> 시설자금
채권보전형태	<input type="checkbox"/> 순수신용 <input type="checkbox"/> 담보 <input type="checkbox"/> 보증기관 보증 <input type="checkbox"/> 혼합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대환 <input type="checkbox"/> 만기연장 <input type="checkbox"/> 지원연장
지원부문	$\Delta\Delta\Delta\Delta$ (신청 전산코드 :)	전략지원부문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취급점 및 담당자	OO지점, OOO (☎ , FAX)	특별지원부문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I.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확인	(인)
주소		(☎ , FAX)	
자금담당자		e - mail	
업종명 (KSIC 5자리코드)	$\Delta\Delta\Delta\Delt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용등급 (은행자체 등급)	
자금용도		설립일	
주생산품		사업자등록번호	
상시종업원수	명	법인등록번호	
매출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총자산	백만원	(납입자본금)	(백만원)

III. 첨부서류

1. 대출금원장(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 1부
4. 기타 한국은행이 요청한 서류. 끝.

<별지 제5호 서식>

창업중소기업 확인서

(년 월말 현재)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귀하

아래 업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 업체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설립일자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내용 일부 생략>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